|  |  |  |
| --- | --- | --- |
| **1.6.2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및 납부연기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각 성, 자치구, 직할시, 규획단열시 재정청(국), 계획위원회, 물가국, 환경보호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 각 부 위원회, 각 직속기구:오염물 배출비용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및 납부 연기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오염물 배출비용 징수 사용관리 조례>>(국무원령 제369호) 규정에 의거하여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및 납부 연기 행위 등의 유관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오염물 배출자는 태풍, 화산폭발, 홍수, 가뭄,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및 갑작스레 발생한 공공위생 사건, 화재, 타인에 의한 손해 등 중대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겪을 경우, 본 통지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염물 배출자가 적시에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환경오염은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본 조항에 부합하는 오염물 배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최고액은 1년간 납부해야 하는 오염물 배출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2. 오염물 배출자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및 기타 갑작스런 사건에 처하여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을 신청할 경우, 시(지, 주)급 이상 재정, 가격 주관부문이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책임지고 심사하여 허가한다. 1) 수용량 30만KW(킬로와트) 이상의 전력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비용 감면을 신청하고 아래의 직권 범위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➀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액수가 500만 위안 이하(500만 위안 포함)일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 및 가격주관 부문이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심사하고 허가한다. ➁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액수가 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 및 가격주관 부문이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고, 국무원의 재정 및 가격주관 부문에 보고하며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심사하여 허가한다. 2) 본 1조 규정 조항 이외에,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신청은 아래의 직권 범위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➀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액수가 50만 위안 이하(50만 위안 포함)일 경우 시(지, 주) 재정 및 가격 주관 부서가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심사하고 허가한다. ➁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액수가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500만 위안 포함)일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 및 가격 주관부서가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심사하고 허가한다. ➂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액수가 50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 및 가격주관 부문이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고, 국무원의 재정 및 가격주관 부문에 보고하고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심사하고 허가한다. 3.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처리된다. 1) 오염물 배출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와 기타 갑작스레 발생한 사건에 직면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본 통지의 제 2조 규정에 심사허가 권한을 가진 시(지, 주)급 이상의 재정 및 가격, 환경보호 부문에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서면 신청에는 오염물 배출자 명칭, 감면 이유, 감면 액수, 감면 기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중, 국무원의 재정 및 가격주관 부문이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감면을 심사 및 허가해야 하는 것에 해당하는 오염물 배출비용은 오염물 배출자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와 기타 갑작스레 발생한 사건을 직면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 가격, 환경보호 부문에 신청 및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 및 가격주관 부문이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고, 아울러 서면 신청과 함께 심사 의견을 국무원의 재정, 가격, 환경보호 부문에 보고한다. 오염물 배출자가 신청한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신청액수가 환경보호 부문과 동급 재정, 가격주관 부문이 심사 및 허가하는 오염물 배출비용의 책임징수 범위를 초과한 경우, 서면 신청과 동시에 환경보호 부문과 동급의 재정, 가격주관 부문의 오염물 배출비용의 책임징수 사본을 보내야 한다. 2) 시(지, 주)급 이상의 재정, 가격, 환경보호부문은 오염물 배출자로부터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신청을 서면으로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보호 부문이 먼저 사실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심사 의견을 동급 재정, 가격주관 부문에 제출한다. 3) 시(지, 주)급 이상의 재정, 가격주관 부문은 환경보호 부문으로부터 심사의견을 받은 후 30일 내에 본 통지의 제 2조 규정의 직권 범위에 따라,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신청을 한 오염물 배출자에게 서면 형식으로 회답해야 한다. 또한 상급 재정, 가격, 환경보호 부문 및 오염물 배출비용 징수 책임을 가진 환경보호 부문과 동급 재정, 가격주관 부문에 사본을 보낸다. 그 중, 국무원의 재정 및 가격주관 부문이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감면을 심사 및 허가해야 하는 것에 해당하는 오염물 배출비용은 국무원의 재정, 가격주관 부문이 환경보호 부문과 협력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 가격, 환경보호 부문에 회답하며, 동시에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을 신청한 오염물 배출자에게 사본을 보낸다. 4. 양로원, 장애인 복지기구, 장례(葬禮) 기구, 유치원, 특수교육 학교, 초∙중학교 (해당 처리기업은 불포함) 등 국무원의 재정, 가격, 환경보호 부문이 규정한 비영리성 사회공익사업 단위가 오염물 배출의 기준에 부합될 경우, 오염물 배출비용 징수의 책임을 가진 환경보호 부문의 심사를 거친 후 오염물 배출비용의 납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5. 오염물 배출자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비용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와 기타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을 신청하고 시(지, 주)급 이상의 재정, 가격, 환경보호 부문은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기한에 대해 회답한다. 2) 기업이 경영곤란으로 인해 파산, 도산, 생산중지, 반(半)생산중지의 상태인 경우 본 조항 규정에 부합하는 오염물 배출자가 신청하는 오염물 배출비용 납부 연기는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부 연기를 허가 받은 후 1년 내에는 재신청 할 수 없다. 6. 오염물 배출비용의 납부 연기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처리된다. 1) 오염물 배출자는 오염물 배출비용 납부 통지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오염물 배출비용 징수의 책임이 있는 환경보호 부문에 오염물 배출비용 납부 연기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면 신청에는 오염물 배출자의 명칭, 납부 연기 인유, 납부 연기 기한 등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2) 오염물 배출비용 징수의 책임이 있는 환경보호 부문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오염물 배출비용 납부 연기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야 하며,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오염물 배출비용 납부 연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7.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 받은 오염물 배출자 명단은, 환경보호 부문이 동급 재정, 가격주관 부문과 협력하여 6개월마다 1번씩 공고한다. 공고에는 반드시 허가기관, 비준문서번호,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연기의 이유 등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8. 오염물 배출비용에 대해 감면 또는 납부 연기를 허가 받은 오염물 배출자는 해당 오염예방의 책임과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9. 각 지역과 유관 부문은 반드시 엄격하게 본 통지의 규정을 집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또는 납부 연기 범위를 독단적이고 임의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없으며, 심사 권한 범위를 초월하거나 심사 순서를 위반하여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 연기를 허가 할 수 없다. 10. 오염물 배출자에게 허위로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 연기를 사취하거나, 현급 이상의 재정, 가격, 환경보호 부문이 본 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 배출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 연기를 허가하는 경우, <<오염물 배출비용 징수사용 관리조례>>(국무원령 제369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1. 본 통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거 유관 규정과 본 통지가 불일치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이번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12.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통지 규정이 제정한 오염물 배출비용 감면 또는 납부 연기의 구체적 방법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재정, 가격, 환경보호 부문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환경보호총국2003년 6월 3일 |  | **1.6.2关于减免及缓缴排污费****有关问题的通知**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计委、物价局、环保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为加强排污费征收管理，规范排污费减免及缓缴行为，根据《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国务院令第369号）的规定，现就减免及缓缴排污费等有关问题通知如下： 　　一、排污者遇台风、火山爆发、洪水、干旱、地震等不可抗力自然灾害以及因突发公共卫生事件、火灾、他人破坏等遭受重大直接经济损失，可以按照本通知规定申请减缴或者免缴排污费；排污者因未及时采取有效措施，造成环境污染的，不得申请减缴或者免缴排污费。 　　符合本条规定的排污者申请减免排污费的最高限额不得超过1年的排污费应缴额。 　　二、排污者遇不可抗力自然灾害和其他突发事件申请减免排污费，由市（地、州）级以上财政、价格主管部门会同环保部门负责审批。 　　（一）装机容量30万千瓦以上的电力企业申请减免二氧化硫排污费，按照下列权限审批： 　　1、减免排污费数额在500万元以下（含500万元）的，由省、自治区、直辖市财政、价格主管部门会同环保部门审批。 　　2、减免排污费数额在500万元以上的，由省、自治区、直辖市财政、价格主管部门会同环保部门提出审核意见，报国务院财政、价格主管部门会同环保部门审批。 （二）除本条（一）规定以外，申请减免排污费，按照下列权限审批： 　　1、减免排污费数额在50万元以下（含50万元）的，由市（地、州）财政、价格主管部门会同环保部门审批。 　　2、减免排污费数额在50万元以上500万元以下（含500万元）的，由省、自治区、直辖市财政、价格主管部门会同环保部门审批。 　　3、减免排污费数额在500万元以上的，由省、自治区、直辖市财政、价格主管部门会同环保部门提出审核意见，报国务院财政、价格主管部门会同环保部门审批。 　　三、减免排污费按照下列程序办理： （一）排污者自遇不可抗力自然灾害和其他突发事件之日起30日内，向本通知第二条规定具有审批权限的市（地、州）级以上财政、价格、环保部门提出减免排污费的书面申请。书面申请包括排污者名称、减免理由、减免数额、减免期限等内容。其中，属于国务院财政、价格主管部门会同环保部门审批减免的排污费，排污者应当自遇不可抗力自然灾害和其他突发事件之日起30日内，将书面申请报送省、自治区、直辖市财政、价格、环保部门，由省、自治区、直辖市财政、价格主管部门会同环保部门提出审核意见，并将书面申请连同审核意见报国务院财政、价格、环保部门。排污者申请减免排污费数额超过负责征收排污费的环保部门和同级财政、价格主管部门审批权限的，其书面申请应当同时抄送负责征收排污费的环保部门和同级财政、价格主管部门。　　（二）市（地、州）级以上财政、价格、环保部门收到排污者减免排污费的书面申请后，应当在30日内由环保部门先进行调查核实，并提出审核意见报同级财政、价格主管部门。 （三）市（地、州）级以上财政、价格主管部门应当在收到环保部门审核意见的30日内按照本通知第二条规定的权限，会同环保部门作出是否批准减免排污费的决定，并以书面形式批复申请减免排污费的排污者，同时抄送上级财政、价格、环保部门以及负责征收排污费的环保部门和同级财政、价格主管部门。其中，属于国务院财政、价格主管部门会同环保部门审批减免的排污费，由国务院财政、价格主管部门会同环保部门批复省、自治区、直辖市财政、价格、环保部门，同时抄送申请减免排污费的排污者。 　　四、养老院、残疾人福利机构、殡葬机构、幼儿园、特殊教育学校、中小学校（不含其所办企业）等国务院财政、价格、环保部门规定的非盈利性社会公益事业单位，在达标排放污染物的情况下，经负责征收排污费的环保部门核准后可以免缴排污费。 　　五、排污者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按照本通知规定申请缓缴排污费： 　　（一）遇不可抗力自然灾害和其他突发事件，正在申请减免排污费以及市（地、州）级以上财政、价格、环保部门正在批复减免排污费期间。 　　（二）企业由于经营困难处于破产、倒闭、停产、半停产状态。 　　符合本条规定的排污者申请缓缴排污费的最长期限不超过3个月。在批准缓缴后1年内不得再重新申请。 　　六、缓缴排污费按照下列程序办理： 　　（一）排污者自接到排污费缴纳通知单之日起7日内，向负责征收排污费的环保部门提出缓缴排污费的书面申请，书面申请包括排污者名称、缓缴理由、缓缴期限等内容。 　　（二）负责征收排污费的环保部门自接到申请之日起7日内，应当作出是否批准缓缴排污费的书面决定，期满未作出决定的，视为同意缓缴排污费。 　　七、批准减免或缓缴排污费的排污者名单，由环保部门会同同级财政、价格主管部门每半年公告一次。公告应当包括批准机关、批准文号、批准减免或缓缴排污费的主要理由等内容。 　　八、对批准减免或缓缴排污费的排污者，不免除其防治污染的责任和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责任。 　　九、各地区和有关部门应当严格按照本通知规定执行，不得以任何名义擅自扩大排污费减免及缓缴的范围，也不得超越审批权限或违反审批程序批准减免及缓缴排污费。 　　十、对排污者以欺骗手段骗取减免或缓缴排污费，以及县级以上财政、价格、环保部门违反本通知规定批准减免或缓缴排污费的，按照《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国务院令第369号）的规定进行处罚。 　　十一、本通知自2003年7月1日起执行。过去有关规定与本通知不一致的，一律以本通知为准。 　　十二、各省、自治区、直辖市可根据本通知规定制定减免及缓缴排污费的具体办法，报国务院财政、价格、环保部门备案。 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国家环保总局二〇〇三年六月三日 |